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자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 지원
- 라.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안 제5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 제93조
「노인복지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나. 예산조치: 2020년 예산 5,000천원 반영(도비 50%, 군비 50%)

다. 합 의

- 1) 기획감사담당관(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223호
 - 가) 예고기간: 2019. 9. 10. ~ 9. 30.(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2020년 5,000천원 예산 편성(예상인원 50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